

[자료 소개]

조선·대한제국 條約文 원본들과 중요 근대화 사업 계약문서들의 행방

이 태 진

— .

조선왕조는 1876년 2월에 일본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문호를 개방하여 이후 미국 등 서양 여러 나라들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원본으로 현재 국내에 전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이후에 강요된 협정들의 원본들은 현재 서울대奎章閣에 그대로 다 보관되어 있으나 그 이전 것은 영국과의 수호통상조약 漢文本 하나 뿐이다.¹⁾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서울대奎章閣 도서 중에 「隆熙四年五月十二日 警視總監 若林資藏, 內部大臣 朴齊純閣下 條約書類進達의 件」이란 제목을 단 공문 서류 한벌 (6매, 日本文, 도서번호奎 23154) <자료 1이라 칭한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서류의 머리에 統監府 警視總監이 한국 내부대신 박제순에게 밝힌 사연은 다음과 같다.

目下 詐欺로 재물을 취해 (取財) 고발을 당한 (被告) 사건에 관해 當廳에서 취조 중인 피고인 趙南升이 太皇帝 폐하가 명령했다고 칭하면서 일찍이 佛蘭西 教會 敎主 閔德孝에게 부탁하여 보관하게 한 條約書類를 이번에 발견한 데 대해 別紙 目錄 相添 現品 및 進達條 영수증 發交를 바랍니다.

즉 皇帝位에서 물러나 있는 고종황제가 趙南升(升은 昇의 잘못)에게 「조약 서류」를 맡겼고, 趙는 그것들을 프랑스 신부 민덕효 즉 뮈텔(Mütel, Gustave

1) 규장각도서 번호 15305-15307. 英國條約 附通商章程稅則續約.

Charles Marie)에게 부탁해 보관시켰는데, “사기로 재물을 취해 고발을 당한” 어떤 사건으로 그를 취조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품을 모두 찾았으니 현품과 그 목록을 본 다음, 進達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일본이 「한국병합」을 강행하기 3개월 여 전인 1910년 5월 12일의 일이다.

압수 물품의 목록은 위의 서두문에 이어 「佛人 閔德孝로부터 징수한 鐵櫃內 文書」란 제목아래 ‘在朝鮮國日本民人通商章程 (漢日文, 2건)’을 비롯해 87종의 문서 명칭들을 실었다. 이 가운데 日本 英國 淸國 美國 德國 法國 奧國 義國 俄羅斯國 丹國 和國 伊太利國 比利時國 등 여러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 원문 및 비준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에만 의존하면 고종황제가 어떤 이유로 조남승을 시켜 감추었던 중요 외교문서들을 통감부가 찾아내어 대한 제국 정부에 넘겨 준 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二 .

다음은 일본의 『日本外交史料館所藏 外務省記錄 總目錄』 戰前期 第1卷 (明治大正篇) 第5類 (帝國內政) 4項 (雜) (29면)에 올라 있는 한 所藏 文件의 명칭이다.

<자료 2>

韓國太皇帝의 外國元首에 對한 親書原本 및 趙南昇에 내린 密書發見, 그리고 統監府가 (이전에) 請求했을 때 燒失의 理由를 들어 引渡하는 것을 拒絶한 韓國諸條約本書로 京城 佛蘭西 教會 監督 뒤텔로부터 回收한 一件, 冊數 1冊

이 문건명의 뜻을 풀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 太皇帝(고종)가 외국 원수들에게 보낸 친서 원본 및 조남승에게 내린 밀서, 통감부가 전에 고종황제에게 引渡를 요청했을 때 燒失을 이유로 거절했던 한국의 여러 조약문들을 京城 불란서 교회의 뒤텔 신부로부터 회수한 문건들이란 뜻이다.

을사특약을 강제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6년 2월 1일 통감부를 설치한 후 고종황제에게 그간에 체결한 각국과의 조약 원본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을사특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고종황제는 1904년 12월

에 있었던 慶運宮 中和殿 화재 시 조약문서들이 모두 불탔다는 이유를 들어 내놓지를 았다가 나중에 이를 조남승을 시켜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다. 조남승은 이 문서들을 들고 북한산성, 강화도 등지를 전전하였으나 곳곳에 일본 軍警의 눈이 있어 다시 서울로 돌아와 치외법권 지역인 뒤편 신부의 교회에 맡겼다.²⁾ 어떻든, 위와 같은 문건 명으로 東京 외무성 外交史料館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조약문 원본들이 아니라 위 <자료 1>과 비슷한 24면 짜리 문서자료이다. 이 문서는 統監府 용지를 사용하였고, 明治 43년(1910) 6월에 統監 子爵 寺內正毅가 外務大臣 伯爵 小村壽太郎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첨부 사진 1 참조)

문서는 號外, 甲號 一·二, 乙號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서 작성의 내역을 밝힌 號外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자료 3-1>

號外

지난번 韓人 趙南昇이란 자, 太皇帝가 미국인 「콜브란, 보스트위크」에게 주었다고 하는 電氣會社 株券賣渡委任狀 위조 혐의로 한국 警視廳에서 취조를 한 결과 그 자백에 의해 태황제가 발부한 外國 元首에 대한 親書 원본과 함께 조남승에게 내려진 密書 등 別紙 甲號 目錄과 같이 발견되어 조사해서 이를 압수해 두었다. 또 지난 明治 39년(1906)에 한국의 각국과 체결한 條約本書(원본: 필자) 引渡할 것을 統監府가 조회했던 바, 당시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引渡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위 조남승의 자백에 의하면 태황제(당시의 황제)의 命에 의해 同人이 京城 佛蘭西 教會 監督 뒤편에게 그 보관을 위탁했던 듯 하다. 먼저 한국정부에서 이를 회수하여 지난번에 그것을 인도하지 못한 이유 및 이번 발견의 사실을 갖추어 별지 乙號 목록과 같이 다시 統監府에 인계 수속을 마쳐 두었다. 상세한 사실 판명되었으니 본건의 처분을 결정해주실 수 있도록 通牒합니다.

明治 43년(1910) 6월

統監 子爵 寺內正毅

外務大臣伯爵 小村壽太郎殿

위 <자료 1>은 조남승이 취조를 받게 된 것을 詐欺로 재물을 취해 (取財) 고발을 당한 (被告)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號外에서는 고종황제가 미국인 콜

2) 田保橋 潔, 『朝鮮統治史論稿』,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1944. 23-24면.

브란·보스트위크에게 주었다고 하는 電氣會社 株券賣渡 委任狀을 위조한 혐의라고 하였다. 콜브란, 보스트위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Collbran & Bostwick Development Company의 社主들로서, 한국의 고종황제와 공동 출자하여 서울에 漢城電氣會社를 설립하여 서울의 전기, 전차 부설, 상수도 공급, 전화통신 등의 기업활동을 수행했다. 1904년 말에는 갑산금광 채굴권을 따서 漢城鑛山會社 (Seoul Mining Co.)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 회사들의 사업은 고종황제의 光武 연간 산업화정책의 주요 부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駐韓 미국공사 Allen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 강제 때는 한성전기회사 소속 변호사 엘리엇(Elliot)가 고종황제가 미국 체류 중의 알렌 공사에게 을사늑약 무효운동을 부탁하는 밀지를 보낼 때 이를 가지고 上海로 가서 본사 사주 콜브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³⁾ 1909년의 시점에서 고종황제는 자신이 소유한 한성전기회사의 株券을 매도할 생각을 하여 매도권을 조남승에게 맡겼는데 이것을 일본 통감부가 탐지하고 그를 주권 매도 위임장 위조죄로 몰아 체포한 것이다.

조남승은 고종황제의 甥姪로서 황제로부터 끝까지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가 위임장 위조죄로 몰린 사연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고종황제는 1903년 12월 2일 순 23 덩이 (bars, 당시 日貨 150,000엔 평가), 주권(stocks)과 公債증서 (bonds) 등을 上海에 있는 독일계 은행 Deutsch Asiatic Bank를 통해 베르린에 있는 Disconto Bank에 위탁 보관하였다. 황제는 퇴위 중이던 1909년 10월 20일 이를 찾고자 조남승을 통해 고문관 경력을 가진 미국인 헬버트(Homer Bazaleel Hulbert)에게 親押 親書의 위임장(첨부 사진 2)을 전달하였다. 헬버트는 이를 가지고 上海에 갔으나 이미 보관 금의 값에 해당하는 15만여 엔이 1908년 4월 22일자로 통감부 통감에게 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감부가 대한제국 宮內府大臣 (李允容)을 동원해 그 직함으로 돈을 인출하게 만들었다.⁴⁾ 1908년은 통감부가 대한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지

3) 이상 콜브란, 보스트위크에 대해서는 金基嘍, 『光武帝의 주권 수호 외교, 1905-1907: 乙巳勅約 무효 선언을 중심으로』 (이대진 편저, 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수록) 241-242면 참조.

4) 이상은 1994년 1월에 외교안보연구원이 공개한 외교자료 『對 독일 미청산채권의 청산요청 1951-55』(분류번호 722.1 GE, 등록번호 48)의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된

배권을 가지고 황제가 관장하고 있던 모든 재산도 國有로 전환시켜 사실상 일본정부의 재산이 되게 만들었다. 그들은 황제가 자신의 명의로 비밀리에 외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것조차 이렇게 통감부 소관으로 빼돌렸다. 1908년 4월에 이렇게 예치금에 대한 현금을 빼돌린 다음, 조남승을 “太皇帝가 미국인 콜브란, 보스트위크에게 주었다고 하는 電氣會社 株券賣渡委任狀을 위조한 혐의로”로 몬 것은 아마도 같은 은행에 예치된 주권을 강제로 찾을 목적이 아니었던가 추정된다. 어쨌든 그를 잡아 문초하는 과정에 고종황제가 그에게 보관을 맡겼던 중요 외교문서와 계약 문서들이 압수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압수된 문서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 甲號의 一. 4월 27일 淸國人으로부터 領置의 分 索引 目錄 43건 <자료 3-2>
 甲號의 二. 御親書에 基因한 調査 事件 目錄 26건 <자료 3-3>
 乙號 目錄 87건 <자료 3-4>

甲號의 一의 의미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領置받았다는 청국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단지 43종에 달하는 목록을 제시해 두는 데 그칠 수 밖에 없다. 아래 목록으로만 봐도 중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각 건은 1종의 문서로 되어 있었을 것이나 복수의 문서들이 한 건을 이루었을 수도 있다. 건수와 별도로 문서의 수효를 밝힌 것은 乙號만이다. 아래 중 26 27 28 29 등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들은 최근 서울학연구소가 러시아에서 찾은 것과 같은 내용의 것으로 보인다. 단 서울학연구소는 3점만 찾았다.

것이다. 1951년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중심이 되어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미청산 채권이 있는 나라는 모두 신청을 하라는 통고가 있어, 이때까지 헐버트씨의 遺志로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미국인 변호사 Stagger씨가 한국 외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 바로 이 자료의 모음이다. 그러나 당시 戰時여서인지,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인지 이 건은 삼국이 중심이 된 런던 회의에 제출도 되지 않았던 듯하다. 헐버트씨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별도로 관련 자료를 보내 이 돈은 반드시 한국인, 한국정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3-2〉

甲號 一

4월 27일 淸國人으로부터 領置之 分 索引 目錄

1. 金礦會社 및 開發會社株券第貳號의 내용
2. 開發會社 株券 무효의 증명
3. 電氣會社 자금 증 內帑金下賜의 건
4. 西北間島 및 부근의 人民等에 대한 太皇帝의 密諭
5. 英國에 보내야 할 文書
6. 皇室持 電氣會社株券에 관한 건
7. 洋債 借入에 付한 李容植에의 密勅
8. 雲山金礦合同契約改正의 건
9. 日露 이외의 列國과 密約해야만 한다는 上奏文
10. 日本政府 및 軍司令部의 內情 搜查에 관한 건
11. 金弘集 외 數人에 係한 고발서
12. 李寅榮이 啓下文蹟下賜를 奏請한 書
13. 미국인 산즈(Sands) 용빙 계약에 관한 건
14. 露館 潛辛中 露國公使와의 밀약
15. 露館으로부터 귀환후 同館에 보낸 禮狀
16. 國權回復에 관한 上奏文
17. 海牙密使 出發 때 國權回復의 聲援을 露皇帝에 의뢰한 書
18. 獨立協會 撲滅에 관한 건
19. 皇帝로 개칭될 때 臣下 아울러 佛公使等の 의견을 窺知한 書
20. 露韓密約書
21. 礦山及航海에 관한 諸外國과 계약의 건
22. 趙南昇을 露國에 使行케 하는 書
23. 韓皇과 在露京 閔泳煥과 왕복한 電報 束
24. 日韓 第一協約後 露佛獨 황제에 國權 회복의 聲援을 청하는 書
25. 平和克復後 露皇에 보낸 書
26. 日露開戰前 露皇에 보낸 書
27. 日露戰爭中 露皇에 보낸 書
28. 右全件
29. 右全件
30. 京釜鐵道有設에 관한 件
31. 閔泳煥이 駐米公使가 되어야 한다고 奏請한 書
32. 法蘭西 共和國政府에 보내는 書
33. 日露戰爭中 露皇太子誕生을 축하하는 書
34. 日露戰爭中 韓皇太子妃 薨去 痛보하는 書
35. 日露戰爭前 伊太利황제에 局外中立을 聲明하는 書

36. 右件에 대한 이태리 外相의 返書
37. 戰時中 일본 황제폐하에 奉扨한 書
38. 독일황제에 보낸 書
39. 加藤公使에 보낸 書
40. 右에 대한 返書
41. 露韓密約에 관한 密諭
42. 建陽元年에시의 露韓協約
43. 官參賣却 및 典鬪國 정리에 관한 李容翊의 보고서

다음, 甲號 二의 「御親書에 基因한 조사 사건」이란 목록 분류는 조남승 취조 사건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서류들이라고 판단된다. 각 건이 사건으로 분류되거나 綴로 표시된 것도 있는 점으로 보면 각 건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중 1. 御親書原文綴, 2. 電氣會社事件 등으로 볼 때 조남승 취조 문제가 중심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 외국에 자금을 분산시켜 둔 것, 건물을 사 둔 것, 그리고 해외에서의 비밀스런 활동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면 조남승 취조사건은 단순히 전기회사 주권 매도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면서 국가 재산관리를 宮內府 그것도 그 산하의 한 기구인 內藏院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대신급을 비롯한 관료들의 다수가 부정이 심했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황제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궁내부 산하의 기구로 신설하고 그중 중요 재산은 내장원이 취급하게 했다. 그래서 일본 통감부는 이를 황제 사유로 간주하여 국유화의 이름으로 “재산정리”를 단행하여 사실상의 대한제국 국가 재산을 통감부가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외에 公館으로 매입한 건물, 외국 은행에 예치한 金塊 株券 등이 침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종황제는 을사늑약이 강제된 후 이를 무효화 하는 운동과 함께 황제 자신이 미국으로 가는 문제, 間島의 한국인들과 연계하여 反日 활동을 벌이는 문제 등 여러 가지들 구상 또는 추진하였는데, 이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외국 은행에 예치한 자금으로 쓰게 하였거나 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일본 밀정들의 탐지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고종황제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편적으로 알려

졌을 뿐인데, 이 갑호 二의 자료가 나온다면 그 전모와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3〉

甲號의 二

御親書에 基因된 조사 사건 목록

1. 御親書原文綴
2. 電氣會社事件
3. 南韓御巡幸前 李完用 宋秉畷 殺害陰謀事件
4. 米國御潛幸 음모사건
5. 金塊放賣사건 (이상 3-5건 하나로 합철된 상태)
6. 膠外灣에 매수한 가옥 사건
7. 露淸銀行 예금사건
8. 金櫃及鞆을 의국인에 예치한 사건
9. 배세르(裴設) 및 차容奎 등 금 5천圓을 詐取 당한 사건
10. 스티븐슨 살해의 가해자에 대한 賞與의 건
11. 間島의 趙南昇 여행 계획 사건
12. 조남승을 密使로 하여 露國 과건 계획 (10-12 합책)
13. 韓 銀行增資株사건
14. 배세르 조위금의 건
15. 大韓每日申報의 건물에 관한 건(14-15합책)
16. 予龍植 上納洋食 원료 代價의 건
17. 免官後 引續 봉급 급여의 건 (16-17합책)
18. 太皇帝 폐하 조남승에 內命하여 米國 영사관으로 화재를 피해 간 後 問安하게 하고, 또 황제 폐하와의 分御를 알리게 한 件
19. 大韓(漢)門 부근 가옥 文券及前華盛頓公使館家屋文券의 건
20. 西韓 御巡幸에 관한 건
21. 淸國 天津에 매수한 가옥 사건
22. 李裕健 불법 감금 피해의 건
23. 韓太子 渡日에 관한 건
24. 손탁 귀국에 관한 건
25. 米國 通信員에 관한 건, 佛國公使館 건물 매수에 관한 건
26. 金昨鉉에 대한 調書 (24-26合冊)

다음, 乙號는 서두에 소개한, 통감부의 警視廳이 대한제국 내부대신에게 미리 알리고 현품까지 진달 받았다는 영수증 발부를 요구했던 것 그대로이다. 이

요구는 위 〈자료 3-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도로 해석된다. 즉 대한제국 외교 사항과 관련되는 이 문서들은 1906년 통감부 설치 직후 통감부가 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게 된 이상 과거의 조약문들도引渡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로 보면, 당시 고종황제가 내놓지 않은 이 문서들을 이제 찾았으니 이를 일단 대한제국 內部가 접수하고(통감부 설치 후 外部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다시 이를 통감부에 넘기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료 3-1〉에 의하면 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다음 (원본이 한국 内部에 넘겨지지 않았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서들은 통감부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87건의 문건들은 각종 조약문, 비준서, 稅則, 위임장, 신임장, 訓諭 등 대부분이 외교관련 문서들이다.

〈3-4〉

乙號

目録

1. 在朝鮮國 日本民人通(商)章程 (漢,日文)	共 2冊
2. 大英國條約章程 英文	1
3. 中國代辦朝鮮陸路電線條款合同	1
4. 韓淸議約公牘	1
5. 各國約章合編	1
6. 朝日修好條規 (漢,日文)	共2
7. 大清國條約 (大韓比准)	1
8. 京仁間鐵路合同, 雲山金鑛特許証	2
9. 稅則初稿	1
10. 京城駐在副領事稿口直右?門證認狀	1
11. 訓諭欽命駐劄日本弁事大臣 金嘉鎮	1
12. 釜山港 領事 立田革 證認狀	1
13. 釜山浦 領事 室田義木 證認狀	1
14. 朝日通商章程續約 (漢, 日文)	共2
15. 於朝鮮國議定 諸港日來人民貿易規訓(漢,日文)	共2
16. 各國租界章程 (漢英文 共 2冊의 內)	1
17. 日本條約批准 (一袋)	2
18. 朝英條約	1
19. 修好條規附錄	1
20. 通商章程	1
21. 京義鐵路合同	1

22. 朝日海關稅則 (漢日文)	2
23. 朝日通漁章程 (漢日文) 共一袋	2
24. 朝日三川口租界條約 (漢日文) 共一袋	1
25. 元山港 副領事渡邊 修證認狀	1
26. 仁川港領事鈴木充美證認狀	1
27. 釜山浦領事立田革信認狀	1
28. 修好條規附錄 (國文 1 譯漢文 1)	2
29. 日本批准	1
30. 訓諭日本辦理大臣 閔泳駿	1
31. 修好條規 (日本)	1
32. 大法國條約章程 (漢文)	1
33. 大德國條約章程 (德文 英文)	1
34. 絕影島日本煤炭庫約單 (朝日文)	21
35. 訓諭美國參贊官李完用	1
36. 京仁間鐵路朝鮮政府命令合同	1
37. 大俄羅斯國條約章程 (俄文)	1
38. 訓諭英德俄美法五國全權大臣 趙民熙	1
39. 駐日日本辦理大臣委任狀	1
40. 仁川港副領事林權助의 證認狀(但表記無)	1
41. 訓諭英德俄義法五國參贊官李容善	1
42. 日本人民漁採犯罪條規 (漢日文)	共 2
43. 日本電線條款	1
44. 朝日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漢日文)	共 2
45. 駐筭英德俄義法五國全權大臣委任狀	1
46. 駐筭美國全權大臣委任狀	1
47. 釜山浦駐在領事室田義文信認狀	1
48. 訓諭日本參贊官金嘉鎮	1
49. 仁川月尾島集煤庫地基契約(附地圖一紙)	1
50. 慶源鍾城金煤兩鑛條約	1
51. 朝鮮木商會社約章	1
52. 議訂朝鮮國間行里程條約并附錄	1
53. 日本皇帝의 條約批准(赤色紙兼記)	1
54. 朝俄陸路通商章程單	1
55. 俄國一商民뿌리니가 西洋洋木法則	1
56. 癸未春阿須頓稅則論難	1
57. 京城駐在副領事橘口直右門信認狀	1
58. 德國領事口麟證認狀	1
59. 駐筭美國匹羅達皮阿城總領事載肥時証認狀	1
60. 井上伯爵金宏集約款(純子袋入 日韓文)	1

61. 朝清連線章程	1
62. 照會	2
63. 大英國條約章程 (漢文)	1
64. 大法國 條約章程 (漢文)	1
65. 大德國條約章程 (漢文)	1
66. 大俄羅斯國條約章程 (漢文)	1
67. 韓法郵遞法國批准文憑 (法文 漢文 同封)	1
68. 仁川港副領事林權助信認狀	1
69. 大日本國 條約章程 (國書)	1
70. 大法國條約章程 (法文)	1
71. 大法國條約章程批准	1
72. 大美國條約章程 批准附 (漢文美文)	2
73. 大奧國條約互換 (英文 漢文)	2
74. 大德國條約章程 (德文)	1
75. 大俄國條約章程 (漢文)	1
76. 日本通商章程 (漢文)	1
77. 朝日修好條規附錄 (漢日文) 共二의 內	1
78. 大奧國條約章程 (漢文)	1
79. 大丹國條約章程 (漢文)	1
80. 大義大和國條約章程 (漢文 義文 法文)	1
81. 大比利時國通商章程 (漢文 法文 批准)	1
82. 大清國條約 (清國批准)	1
83. 大俄羅斯國條約章程 (俄文)	1
84. 大英國條約章程 (英文)	1
85. 旅行證	10
86. 釜山港領事立田草通知狀	1
87. 訓諭美國全權大臣朴定陽	1

위 <자료 3-1>에 의하면 1910년 6월 현재 통감부는 본국 정부에 대해 문서들의 인계를 완료해 둔 상태로서, 그 처리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안의 내용으로 보아 乙號만에 대한 요청인지, 甲號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종 조약의 원문 및 비준서를 포함한 중요 외교문서들이 처분 지시를 기다린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이 조약 원문들은 이 요청에 대한 본국정부의 답에 따라 소재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三.

현재까지 위 조약 원문들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崔泳禧 선생의 진술에 의하면, 해방 후 국사편찬위원회가 國史館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을 때 벨기에와의 조약 한건을 본 기억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이 구술과는 별도로 문서의 전체 또는 중요한 것들이 일본정부로 보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한 일본의 『外務省記録總目錄』은 「燒失外務省記録」을 별도로 첨부하고 있다. 외무성 大臣官房文書作成課가 1947년(昭和 22년)에 그간 “화재·戰災에 의해 소실된 戰前期 외무성기록 파일의 목록으로” 이것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 중 (1) 明治·大正期에 올라 있는 다음과 같은 件名들이 위의 문제와 관련해 주목된다.

第1門 1-7-10 韓國政府和 諸外國人과의 約定雜件 <가: 번호 필자>

第2門 2-5-2 露韓特殊約定 並히 取極(協約) 雜件

「各國條約改正 一件」

甲의 部

乙의 部

朝鮮各國間條約締結 一件

米韓通商航海條約締結 一件 <나>

英韓修好通商條約締結 一件 <다>

露韓修好通商條約締結 一件 <라>

朝鮮國各國間條約關係雜件 <마>

위 중 가-마의 건명들은 어느 모로 보나 위의 乙號 목록의 조약 원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 라, 마 등 4건의 경우, 일본은 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아니라면 일본 외무성이 이것들을 별도로 확보할 이유가 없다. 나, 다, 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비중이 큰 나라들과의 것으로 특별히 상대국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나라들과의 것들은 마에 일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의 「諸 外國人과의 約定 雜件」은 甲號의 一, 二에 보이는 것 중 외국인, 외국기관의 사업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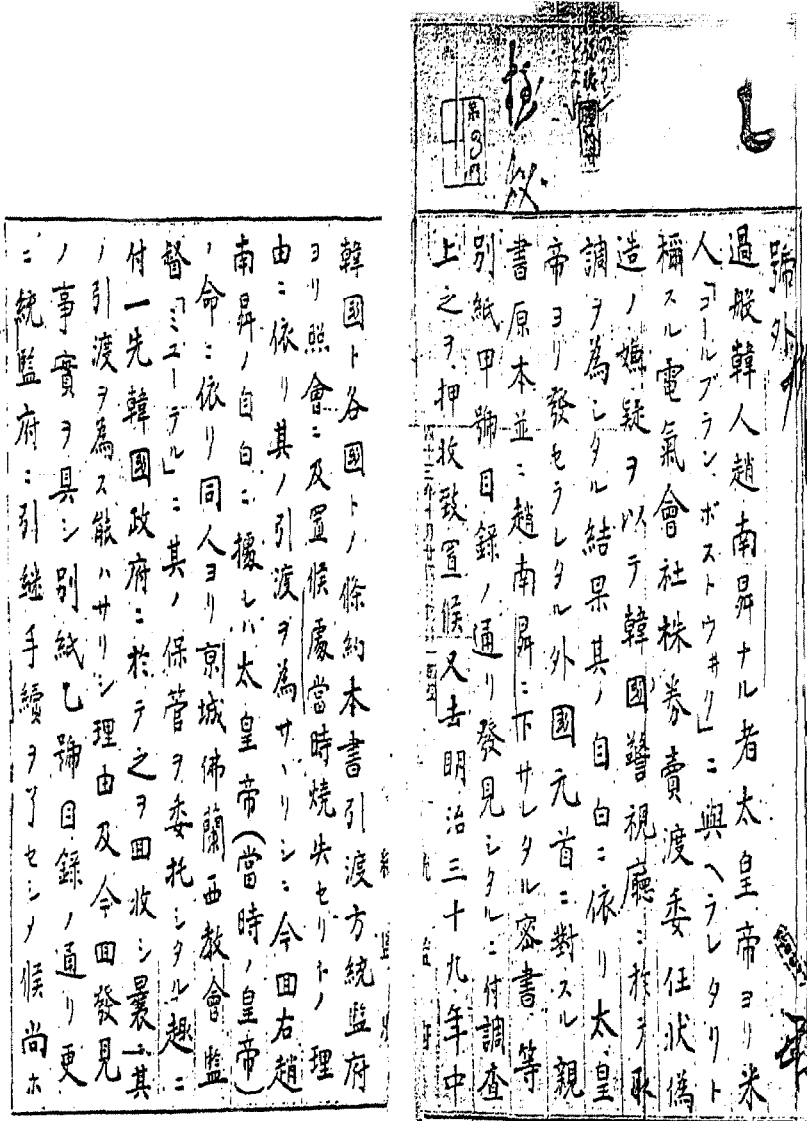
약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어떻든 가-마의 문건들은 唯一本들이므로 1910년 6월 통감부 통감로부터 처리 결정 요청을 받은 일본 外務省이 일본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개중에 통감부에 남겨졌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단 일본 본국 정부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같은 해 8월달 「한국병합조약」이 공포된 이후로는 그렇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경위로 東京 외무성에 보관되어 있다가 1925년의 關東大地震 등으로 일부가 소실된 것이 있어 위와 같이 소실 명단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소실 목록에 오른 문건들이 모두 실제로 소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구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위해 燒失의 이유를 달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1910년 「병합」을 기념하여 대한제국 국새를 비롯한 중요 관용 寶印 8점이 일본 천황에게 보내졌다가 맥아더사령부가 한국에 되돌린 사실을 상기하면 위 문서들은 일본 고위기관에 깊이 수장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니면 '소실'의 위기적 상황에서 바깥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자료들은 조약 원본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고종황제의 근대화 시책 및 강제 퇴위 후 국권 회복을 위한 중요 활동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 있다. 당시 국가 원수가 직접 수장하고 있던 중요 외교관계, 재산관계 등의 증서 및 비밀 국권회복운동 자료인 만큼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확립과 계승이란 면에서도 반드시 그 실재 여부를 확인하여 현전하는 것은 되돌려 놓아야 할 대상이다. (1996, 10)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첨부사진 1> 明治 43년(1910) 6월, 統監 寺內正毅가 日本 外務大臣 小村壽太郎에게 보낸 文書押收에 관한 通牒文의 조반 4면. 統監府 용지를 사용했다.

詳細ノ事實判明ニテ上本件ノ處分ヲ
決定可致等ニ有之候右及通牒候也
明治四十三年六月

統監子爵寺内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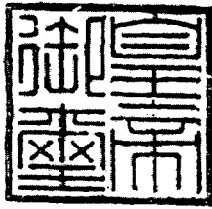
外務大臣伯爵小村壽太郎殿

甲辨一

四月二十七日清國人ヨリ領置ノ分索引

目錄

- 一 金礦會社及開發會社株券等貳種ノ内
容
- 二 開發會社株券無効ノ證明
- 三 電氣會社資金中内帑金下賜ノ件
- 四 西北間島及附近ノ人民等ノ對スル太皇
帝ノ密諭
- 五 英國ニ送ルハキ文書



上海德國銀行任置朕之所有財
 產敢為免奉後而之書公付於爾當
 此後銀行詳細會計并本利沒數
 免細為可悉以親押親書以為憑
 證於其國人說法
 高宗五年七月二十日

0223

<첨부사진 2> 1994년 1월에 외교안보연구원이 공개한 외교자료 「對 독일 미청산채권의 청산요청 1951-55」(분류번호 722.1 GE, 등록번호 48)에 들어있는 고종황제의 親押 親書 위임장.